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9개 산업통상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8조의2제1항”을 “법 제28조의2제1항,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27호”로 한다.

제2조(「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 단서”를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로 한다.

제3조(「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15조제3항”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을 “(공장설립 승인의 공동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공장 설립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를 “공장설립승인등을 하면서”로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3.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1종 가스시설공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3종 가스시설공사)을”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스시설시공업”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가스시설공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수용가”를 “수요자”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을 각각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1종 가스시설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제2종 가스시설공사)”로 한다.

제62조의3제2호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1종 가스시설공사)”로 한다.

제7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서류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기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기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기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9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8조제2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3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12조(「석유광산안전규칙」의 개정)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광산보안관의 증표)”를 “(광산안전관의 증표)”로 한다.

제39조 중 “광산종업원”을 “광산근로자”로 한다.

제141조 중 “폐쇄하는”을 “폐쇄하는”으로 한다.

제210조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경쟁력강화 주요 내용란,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서명란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6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서명란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서명란 중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위탁운송운반자”를 “위탁운송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60조제2항제5호”를 “제60조제2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60조제2항제7호”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60조제2항제7호”를 “제60조제2항제8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60조제2항제8호”를 “제60조제2항제9호”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제60조제2항제9호”를 “제60조제2항제10호”로 한다.

제16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제10조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을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으로,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을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으로,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을”을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을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

제18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9항”을 “영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동의서란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4호나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4호가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직인란 중 “제14조의7조제4항”을 “제14조의7제4

항”으로 한다.

제20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기부 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5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2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파목,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변경 내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변경 내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23조(「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 개별기준표 제5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11조제1항제6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4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금액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서명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서명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중 “제31조의3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9호서식 중 “제31조의3제3항”을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중 “제31조의3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6조(「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7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 서류”로 한다.

제29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행 기관 및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7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구분	신청인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의 경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계획서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서류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신청하려는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경 제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28조의2제1항</u>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② <u>법 제28조의2제1항,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27호</u> ----- ----- ----- --.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 ----- ----- ----- ----- -----.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 ----- ----- -----.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법 제18조제3항-----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신청서)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산업교육기관</u>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u>산업교육기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4조(공장설립 승인의 공동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신청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공장 설립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포함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공장설립승인등을 하면서 ----

-----.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3.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

	<u>·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로서</u> <u>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u>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4호·제5호, 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u>제4호의4서식</u>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별지 제4호의4서식</u>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삭제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u>건설기술</u>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6. ----- ----- <u>건설기술</u>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인을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4.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1종 가스시설공사)-----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제3종 가스

그 공사를 시공·관리한 것일 것	<u>시설공사</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 상 <u>수용가</u> 수(數)	3. ----- -- <u>수요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 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 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 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 설점검원, <u>제1종 또는 제2종 가 스시설시공업</u> 등록을 위한 자격 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 무 대행자의 자격) ----- ----- ----- ----- -----. ----- <u>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1종 가스시설공사) 또는 가 스·난방공사업(제2종 가스시 설공사)</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u>국가과학기술연구회</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u>사업자등록증 사본</u> 을 첨부하게 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해야 --. ----- ----- <u>해당 서류</u> 를 -----.

③ (생 략)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③ (생 략)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 -----

----- 해당 서류를 -----.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 -----

----- 해당 서류를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 제

<u>36조제1항</u>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u>사업자 등록증 사본</u>을 첨부하게 한다.	<u>36조제2항</u>----- ----- <u>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해야</u> --. ----- ----- ----- <u>해당 서 류를</u>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u>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u>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 ----- ----- ----- 다음 각 호의 서류----- ----- ----- ----- ----- ----- ----- ----- ----- ----- -----
<신 설>	1. <u>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u>
<신 설>	2. <u>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u>

② ~ ④ (생략)	<u>당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2항</u> 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 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 ----- ----- <u>제2조제2호</u> ----- ----- ----- -----.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 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 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 는 권한을 특별시장· <u>광역시</u>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 한은 제외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 ----- ----- ----- ----- ----- <u>광역시</u> <u>· 특별자치시장</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u> 한다. ⑤ <u>영 제18조제2항</u> 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사업자등록증을 확인</u> <u>해야</u> --. ----- <u>사업</u> <u>자등록증의</u> ----- <u>않</u> <u>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u> <u>하도록 해야</u> ----- --. ⑤ <u>영 제18조제3항</u> ----- ----- -----.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④·⑤ (생략)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
해야 --. ----- 사업
자등록증명의 확인----- 않
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해야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3호서
식-----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생 략) <u>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u> <u>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u> <u>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u> <u>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 ③ (생략)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 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 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 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생략)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 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 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 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u>한국광물자원공사</u> 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 ----- ----- ----- <u>한국광해광업공단</u> ----- ----- -----.
제17조(<u>광산보안관의 증표</u>) (생 략)	제17조(<u>광산안전관의 증표</u>) (현행 과 같음)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

서 작업하는 <u>광산종업원</u>의 비상 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 차단장치를 <u>폐쇄하는</u> 등의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0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u>한국 광물자원공사</u>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 ⑤ (생략)	----- <u>광산근로자</u>----- ----- ----- ---.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 ----- ----- ----- ----- <u>폐쇄하는</u> ----- -----. 제21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국 광해광업공단</u>이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생략)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 ----- --- <u>사업자등록증</u> ----- ---. ----- <u>사업자등록증</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생략)	제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② ----- ----- ----- ----- ----- <u>사업자등록증</u> ----- -----. ----- <u>사업자등록증</u> ----- -----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
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
다.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
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 -----
-----.

-----.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
록증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③ (현행과 같음)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 <u>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u> <u>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u> <u>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u> <u>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u> <u>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u> <u>하여야 한다.</u>	<삭 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 사본</u> ③·④ (생략)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 사본</u>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u>사업자등록증</u>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생략)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u>사업자등록증</u>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 ----- ----- ----- ----- ----- ----- ----- -----. 1.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2. (현행과 같음) 3. ----- ----- <u>사업자등록증명</u> 4. (현행과 같음)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u>영 제19조제9항</u> 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u>영 제19조제10항</u>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생략)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그 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 ----- <u>해당 서류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생략)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u>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u>토지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u> -----.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생략)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u>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u>토지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u> ----- -----.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u>등기부 등본을</u>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등기 사항증명서를</u> -----.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u>개인정보보호법</u>」 제2조제7호에 따른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 관리) ----- -----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7호에 따른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1항제1호</u>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 8.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u>법 제11조제1항</u>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략)	<u>8호</u>----- -----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3. (생 략) ③ ~ ⑦ (생 략)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생략)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 사본</u> 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u>사업자등록증</u> ----- ----- ----- ----- <u>사업자등록증</u> 의 ----- ----- <u>해당 서류</u> 를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제조신고 등) ① (생략)	제2조의2(제조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	② ----- ----- ----- ----- <u>사업자등록증</u> ----- -----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허가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
사업자등록증명의 -----
----- 해당 서류
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
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의 -----
----- 해당 서류
를 -----
-----.

제7조(수입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

<u>자등록증을</u>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확인</u>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 록증 사본</u>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 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확인</u>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 록증 사본</u>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자등록증명</u>-----. ----- <u>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u>----- <u>해당 서류 를</u>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업 자등록증명</u>-----. ----- <u>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u>----- <u>해당 서류 를</u> ----- -----. ③ (현행과 같음)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 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 ----- ----- ----- ----- <u>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행 기관 및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 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② (생략)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 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 일 <u>7일</u>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 ----- ----- -- <u>10일</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